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①책형

<2020 법무사>

【문4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신청인을 비공개로 심문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해설

- ①
- ②
- ③
- ④
- ⑤

【例規】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예규 제256호 ~ 개정 2020.02.21 예규 제550호

제3조(참고서면) <제3조 개정 2020.2.21>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改前 ...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제5호 개정 2020.2.21>
 6. 부모의 동의서 <제6호 삭제 2019.8.19>
 ②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그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2020.2.21>

제5조(법원의 심리)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참고사항) <제6조 개정 2020.2.21>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③)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인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全합) 2011.9.2. 2009스117.)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8조(개명허가신청)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하거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중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심리와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에 따르되, 같은 예규 제3조 제1항의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부 칙(2019.08.19. 제53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제550호)

이 예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정답 : ③

<2020 법무사>

【문42】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 ②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일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소명된 경우 내어준다.
-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 ⑤ 협의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

면에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를 준용한다. (註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
- ② **【例規】** 제525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9조(조서의 작성)

 - 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서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예규 제525호 §17). 이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예규 제525호 §18).
- ⑤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에 출석 or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cf) **【例規】** 제525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2조(신청서의 제출)

 -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③

<2020 법무사>

【문43】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 ② 자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사건
- ③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사건
- 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의 허가 사건

해설

- ④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1항 제1호 개정 2018.4.27., 시행 2018.5.8.>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改前 창성창본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정답 : ④

<2020 법무사>

【문44】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해설

- ① **【例規】** 제415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②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註 확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신고서) 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양자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한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
 양부모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구별 없이 모두 자녀로 기록되거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자녀 중에서 양자만이 양자로 기록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입양당사자 중 일방(양자 또는 양부모)이 외국인인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자녀(또는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입양신고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한다.

정답 : ②

<2020 법무사>

【문45】 직권 정정·기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김철수(金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김철수(金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 ① **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
- ② **【例規】 제11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 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 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③ **【例規】 제510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 ④ **3. 「성명란」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개정 2017.6.29>

 -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 ④ **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 ⑤ **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신고·부재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2020 법무사〉

【문46】 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없다.
- ③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 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例規】** 제412호〔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註 수리)
 제6조(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例規】** 제509호〔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5. 이름의 한글·한자 표기 ☆☆☆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改前 : … 수리해서는 안 된다.)
- ④ **【例規】** 제515호〔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4.07.14 예규 제402호 개정 2015.06.10 예규 제463호 개정 2018.04.30 예규 제515호
 제2조(전자신고의 종류)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
 5.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5호 신설 2018.4.30., 시행 2018.5.8>

- ⑤ **先例** 제201806-3호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따라서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1)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나 친생자 출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그러나 2)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2018. 6. 1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436 질의회답)

정답 : ③

〈2020 법무사〉

【문47】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 ④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해설

- ① **例規** 제531호 제14조(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先例** 제3-254호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혼인신고 거부 등]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혼인이 성립하는 것이며 /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1994. 3. 5. 법정 3202-105)
- ③ **例規** 제85호 [확정판결(조정)의 소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 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적격자)

④ **【例規】** 제412호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父) 미정(未定)의 출생신고란,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父)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i)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父)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ii)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iii)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iv)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v)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例規】** 제515호(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4.07.14 예규 제402호 개정 2015.06.10 예규 제463호 개정 2018.04.30 예규 제515호
 제2조(전자신고의 종류)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
 5.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5호 신설 2018.4.30., 시행 2018.5.8>

정답 : ④

<2020 법무사>

【문48】 다음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입양신고
- ② 개명신고
- ③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④ 인지신고
- ⑤ 친권자 지정 신고

해설

④ **법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보고적 신고 ⇒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④

<2020 법무사>

【문49】 다음에 열거한 기록사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ㄴ. 본인의 출생에 관한 사항
- ㄷ.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ㄹ. 본인의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전부

해설

- ④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본조신설 2019.11.6, 시행 2019.12.27.>
- ①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자녀×)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 출생장소, 혼인성립일, 부모·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 필수항목)
 -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에규로 정한다.

정답 : ④

<2020 법무사>

【문50】 다음 중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은?

- ①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 ③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신고 불수리의 통지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국적취득의 통보 수리
- ⑤ 과태료 부과·징수 - 신고서류의 조사 및 시정지시

해설

- ※ **법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사·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권한의 위임), 제5조(직무의 제한),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제38조(신고의 최고),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3조(신고 불수리의 통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사·읍·면의 조치),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를 준용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법 제18조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법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법 제115조 신고서류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정답 : ③